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 방향

<산업자원부>

목 차

I. 추진 배경

II.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방향

III.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과제 1. 전자상거래 법적 환경 마련

과제 2. 수요자 중심의 세부시책 추진으로 수요창출

과제 3.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Infra) 구축

과제 4. 전자상거래 이해 제고 및 마인드 확산

과제 5. 국제협력의 강화

I. 추진 배경

○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지식·정보기반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국가경제·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수단으로 부각

○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가 핵심적인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EU 등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 추진

※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 동향

- WTO : 전자상거래 각료선언 채택('98.5) 및 무역관련 이슈 논의 전개

- OECD :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개최('98.10)

- APEC : 전자상거래 청사진(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C) 채택('98.11)

※ 미국 :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원칙('97.7) 및 제1차 연례보고서('98.11) 발표

○ 국내에서도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안별로는 정통부, 재경부, 특허청 등이 참여

○ '98년까지는 총론적인 접근

인터넷 이용자 및 전자상거래 시장 예측

구 분	인터넷이용자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99	2002	'99	2002
전세계	2억명	3.4억명	2,200억달러	7,900억달러
한 국	275만명	1,000만명	1,500억원	37,800억원

에 치중하였으나, 「전자상거래기본법」제정('99.1.5)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본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 '99년도에는 세부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책을 개발·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체제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통한 효과 극대화 도모

II.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방향

정책 목표

- 국가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추진엔진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 수준을 조기에 향상
- 가시적·구체적인 성과도 출로 전자상거래의 잠재성 실증

과제 1 전자상거래 촉진을 뒷받침하는 법적 환경 마련

- 전자적 매체를 활용하는 새로운 거래양식의 도입·확산에 적합한 법률체제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
- 전자상거래 촉진을 뒷받침하는 관계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제도적 걸림돌 제거

① 「전자거래기본법」제정('99.1.5)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
- 암호제품의 사용제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방안 등을 규정

②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

-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현행 법령중 전자상거래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령 개정(저작권법(문화관광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
- 전자자금이체법, 전자조달 법률의 정비(재경부) 및 세제상의 지원방안, 소액 수출업자에 대한 관세환급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련법령에 반영

③ 범정부적인 전자상거래 추진 체제 및 종합계획 마련

- 민·관 합동의 「전자거래정책협의회(위원장 산자부차관)」를 통한 「전자거래촉진 계획」수립('99.8월)

과제 2 수요자 중심의 세부시책 추진으로 수요 창출

- 전자상거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급 초기단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

- 전자상거래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기업·소비자와 밀착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초기 수요 창출

① 전자상거래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주요 업종별 전자상거래(CALS/EC)기반 구축

- 개별 기업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자상거래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업종단위의 전자상거래 연계체제 구축
- 기존 주력산업(가전·자동차·조선·철강·섬유 등 8개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정보고리로 연결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 물류, 부품표준화·공용화 유도
- ※ 주력산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소요예산은 정보화촉진기금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2000년부터는 산업기술자금 지원)

② 전자상거래 이슈별 진단 및 문제해결 방안 마련

- 세제지원, 소비자보호, 표준화, 전자화폐, 물류유통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의 성장 제고
- ※ 핵심적인 10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공기반사업 기술료 활용

③ 사이버몰(cybermall) 및 무역 거래알선시스템 확충

- 「사이버몰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공동 물류체제 구축 등의 애로사항 파악·해결
- 인터넷 무역거래 촉진을 위한 무역알선업체간의 연계 및 육성
- ※ 국내 제품·홍보를 위한 관문사이트(portal site) 구축(수출과 협조)

과제 3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구축

-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접근과 병행하여 관련기술 수준의 향상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전자상거래 성장을 지체시키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활성화 기반 구축

①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지원체제 정비

- 산업기술자금(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전자상거래 항목 신설
- 기술수요가 큰 전자상거래 핵심요소기술(암호알고리즘, 전자지불시스템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

② 전자상거래 표준 확충

- 전자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전자문서 표준화 지원 확대
- ※ 공 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매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2000년도까지 전자문서표준을 300개로 확충('99년말 현재 200개)
- 전자문서 표준과 통신기술표준(정통부 담당)을 연계할 수 있는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99.3월)

③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의 내실화

- 기업·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훈련·기술지도·컨설팅 등을 수행('98년까지 총 10개기관 운영)
- 실무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정기평가를 통한 차등지원('99년 27억원)

④ 「한국전자거래진흥원」설립

- 전자거래표준원을 확대개편하여 민간전문기관으로 설립('99.7월)

⑤ 인터넷 이용 환경의 고도화

- 정통부와 협의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구축하고 인터넷 통신요금의 인하유도

과제 4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제고 및 마인드 확산

- 중소기업·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이해 촉진을 통한 이용 활성화 도모

① 전자상거래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

- 전자상거래 개념부터 구축·활용까지 전 단계를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제작(1만부)하여 전국에 배포

② 우수 사이버몰 포상제도 시행

- 사이버몰 활성화를 위하여 반기별 시상(산자부장관상) 제도 운영
- ※ 전자거래표준원 등 민간기관 주도로 추진하고 우수사이버몰 마크 부여

③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 10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공동 주관('99.4월)

과제 5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강화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제협력과 국제기준(Global

standards)과의 조화가 필요하므로 2000년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WTO·OECD 등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양자간 협력사업 강화

① 다자간 국제기구 논의에 대응

-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전향적으로 대응
- ※ 특히 '99.11월 제3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관세 등 무역관련 이슈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②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

- 아시아 15개국·ESCAP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협력회의, 세미나·전시회 서울 개최('99. 9. 의장국 : 한국)

③ 한·미, 한·일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다른 국가로 확대

■ 배경

-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양식의 도입·확산에 적합한 법률체제로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
- 전자상거래 촉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여 걸림돌 제거

■ 추진 과제

- 가. 「전자거래기본법」 제정('99.1.5)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
 - 불필요한 정부간여가 없도록 하고 민간자율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
- 주요골자(안)
 - 민간업체에 대한 암호사용 제한기준을 “OECD 암호화정책 지침”에 따라 명확히 규정
 - 전자거래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산자부차관, 위원 :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산·학·연 대표
 -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기구의 운영
 -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권고

○ 추진 일정

- '99. 2월 관계부처 협의 및 '99. 3월 입법예고
- '99. 6월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99. 7. 1일부터 시행

나.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

- 현행 법령 중에서 전자상거래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제·개정 촉구
 - 「전자자금이체법(재정경제부)」 제정
 - 전자자금이체시의 이용자 보호 방안, 손해배상 책임, 전자화폐 발행기관 등
 - ※ 미국의 예 : '78년 “연방자금이체법”을 제정
 - 「저작권법(문화관광부)」 개정
 - WIPO 저작권조약을 수용하여 디지털송신과 같이 쌍방향성을 가지는 송신에 대한 전송권 개념 도입 등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 개정
 -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일정기간 내에는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cooling-off) 도입 등
- 정부 조달업무의 전자거래(EDI) 이용 근거 마련

Ⅲ. 과제별 추진 계획

과제 1 전자상거래 촉진을 뒷받침하는 법적 환경 마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등을 정비하여 정부부문부터 전자거래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유도

※ 미국의 예 : “연방조달효율화법('94)”을 제정하여 2000년까지 연방조달계약의 75% 이상을 EDI화 추진

○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시책의 제도화 추진

- 전자거래 단계별(설비투자등 준비 - 인터넷 거래·결제 - 제품 배달) 투자세액공제, 기술·인력개발비 공제, 기술개발준비금이 손금상입 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추진

- 전자거래 도입에 따른 세원노출 기피를 완화하고 투명성 제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차원의 부가가치세 경감 추진

※ 현행 법률에서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 투자세액 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외국과의 거래 촉진과 소자본 창업(SOHO) 활성화를 위하여 소액수출업자에 대한 관세환급방안 검토

- 기타 법인세, 지방세 등의 지원 방안 마련

다. 범정부적인 전자상거래 촉진 체제 및 종합계획 마련

○ 전자거래기본법(제20조)에 따라 범정부적인 「전자거래 촉진계획」수립('99,8월)

○ 촉진계획의 내용

-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이슈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단계별 정부 시책 및 지원정책 등을 마련

· 전자결제, 지적소유권보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전자서명 및 인증, 기술개발·표준화,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등

-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 평가 및 보완

과제 2 수요자 중심의 세부시책 추진으로 수요 창출

■ 배경

○ 전자상거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급 초기단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 전자상거래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기업·소비자와 밀착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초기 수요 창출 및 성장 견인

※ 그 동안의 정부시책인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정부위주의 공급자적 시각에 편향된 면이 있었으며 정책 추진력도 미약

■ 추진 과제

가. 기업간 전자상거래(B to B) 활성화

○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별 CALS/EC 기반 구축

- 개별 기업차원의 전자상거래 도입 한계를 극복하고 전자상거래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업종단위의 연계체제 구축

○ 주력산업(가전·자동차·조선·철강·섬유 등 8개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정보고리로 연결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 물류, 부품표준화·공용화 유도

※ 주력산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소요예산을 정보화촉진기금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2000년부터는 산업기술자금 지원)

※ 외국의 사례

- 일본 : 통산성의 지원하에 JECALS 프로젝트 추진

- 미국 : 자동차 산업(ANX) 등 주요 업종별 프로젝트 추진 중

○ 기대효과

- 업종별 부품 공용화 및 공동구매 등을 통해 연 2,400억원의 비용 절감

- 1조 5,000억원의 물류 및 거래

비용의 절감

- 평균 30% 이상의 제품개발기간 단축
- ※ 동 기대효과는 한국CALS/EC 협회의 자체 조사에 따른 것임

나. 전자상거래 이슈별 진단 및 문제해결 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업체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
- 세제지원, 소비자 보호, 표준화, 전자화폐, 물류유통, 표준약관 등 전자상거래 관련 핵심적인 10개 이슈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의 성장 제고
- ※ 소요예산(약 3억원)은 '99년도 공기반사업 기술료 활용

-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의 정확한 측정 방안 마련 및 장기예측
-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 사이버몰(cybermall) 및 무역거래알선시스템 확충

- 국내 사이버몰의 활성화 지원
- 사이버몰 운영자가 참여하는 「사이버몰 발전 협의회」 구성
-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조건 완화·공동 물류체계 구축, 판매

물품의 제한 완화 등의 애로 사항 파악·해결

- ※ 사이버몰 현황 : 미국 45,000여개, 한국 400여개
- 인터넷 무역거래 촉진을 위한 무역알선업체간의 연계 및 육성
- 인터넷 무역알선 업체(무역협회 : EC 21, KOTRA ; KOBO, KTNET ; EC KOREA, 중진공 ; 인터넷중소기업관 등)를 적극 육성
- 중소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1만개)와 전자상품카드로그(5만개) 제작 지원
- 인터넷 무역거래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
- 해외 유명사이트에 한국 상품의 소개코너 운영(2억원 지원)
- ※ 한국상품에 대한 관문사이트(portal site)로 운영

과제 3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구축

■ 배경

-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접근과 병행하여 관련기술 수준의 향상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전자상거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술적 요인 및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촉진기반 구축

■ 추진 과제

가.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지원체제 확충

- 현재의 단편적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제로 개편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 공통핵심기술개발)의 세부사업 내용에 전자상거래 항목 신설
- 기술수요가 큰 전자상거래 핵심요소기술(암호알고리즘, 전자 지불시스템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
- 업종별 CALS/EC, CALS 표준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확충

나. 전자상거래 표준 확충

- 전자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전자문서 표준화 지원 확대
- 국제표준화(UN/EDIFACT)을 기초로 하여 매년 50종 이상의 표준 전자문서를 개발
- 중점분야 : 유통, 조달, 업종별 표준전자문서 등
- ※ 공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매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2000년도까지 전자문서표준을 300개 이상으로 확충('98년말 현재 200개)
- 「전자상거래 표준화 협의체」

전자상거래

구성 · 운영('99,3월)

- 전자문서 표준 · 정보기술표준 (산자부담당)과 통신기술표준 (정통부담당)을 연계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국가적인 전자상거래 표준화 체제 구축
- 산자부, 정통부, 기술품질원 등 정부부처와 전자거래표준원,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센터 등 참여

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운영의 내실화

- 기업 ·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훈련 · 기술지도 · 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전국적인 전자상거래 촉진거점으로 활용
- ※ 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생산성본부, 무역정보통신 등 총 10개기관 운영중
- ※ 미국의 예 : 전국 16개 지역에 ECRC 운영
- 실용성 있는 실무교육 · 훈련을 강화하고 공통교재 개발 등 지원센터간 정보교유 및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예산의 차등지원 추진('99년 27억원)

- '99년도 사업 목표

- 교육훈련 : 1만명, 컨설팅 : 500개사,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 2만건
- 업종별 CALS/EC, 공공 조달부문의 EDI와 연계

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설립

- 현 전자거래표준원과 유사기관을 통합하여 전자상거래 분야 민간전문기관으로 설립('99,7월)

○ 기능 : 전자상거래 Think-tank로 운영

- 전자상거래 표준개발 및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가
- 전자상거래 법제도 연구 및 보급 · 홍보 · 진흥사업 등

마. 인터넷 이용 환경의 고도화

○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전자상거래의 물리적 기반인 정보고속도로(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 및 고도화

- 광케이블, 케이블TV망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가입자망 구축

(단위 : 천원/월, 환율 : 1,400/1 US\$)

회선속도	미국(IDT사)	한국(KT)	비율(%)
56 Kbps	490	796	162
256 Kbps	980	1,462	149
1,544 Mbps	1,260	3,636	289

※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기업이 사용하는 인터넷망을 우선적으로 고도화 추진

○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요금의 지속적인 인하 유도

※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이 선진국 대비 150~289% 수준(왼쪽 아래 표 참조)

※ 정보통신진흥협회 등 민간기관의 전자상거래 실태조사에서도 '과도한 통신사용료'를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

과제 4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제고 및 마인드 확산

■ 배경

- 아직까지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므로,
-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이해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이용 활성화 도모

■ 추진 과제

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99,3월)

○ 전자상거래 개념부터 구축 ·

- 활용까지 전 단계를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제작(1만부)하여 전국에 배포
- 기업 및 소비자들의 마인드 제고로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 도모

나. 우수 사이버몰 포상제도 시행

○ 추진 배경

- 전자상거래 확대에 장애가 되는 걸림들(비대면 거래로 인한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정보에 대한 신뢰부족, 개인정보의 누출 등)을 최소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조사('98.12월) 결과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 확대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정보에 대한 신뢰부족'을 지적(자료 : '98 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조사 결과 보고서)

○ 사업 내용

-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우수 사이버몰 마크제도 도입
- 마크를 부여받은 사이버몰 중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시상(연 2회)
- 모든 사업은 한국전자거래표

- 준원 등 민간기관 주도로 추진
- 선정된 사이버몰 업체에게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 참여, 각종 포상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조치 마련

○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형성 및 참여 증대로 시장 확대
- 국내 사이버몰 수준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저변 확대
- ※ 외국의 사례
 - 미국 :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TRUST-e 마크제도 시행
 - 유럽 : 민간주도로 Hall 마크제도 운영
 - 일본 : '97년부터 민간연구회 중심의 "온라인쇼핑대상(OLS)" 제도 실시

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전국 10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공동 주관으로 주요 도시 순회 설명회 개최('99.4월)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국적인 홍보
- ※ 서울 : 중진공, 생산성본부 등 5개기관, 대전·충청 : 대전상공회의소, 대구·경북 : 대구상공회의소, 부산·경남

: 부산상공회의소, 광주·전라 : 광주광역정보센터

과제 5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강화

■ 배경

-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 협력의 강화와 국내 제도와 국제기준(global standards)과의 조화가 요구됨
- 특히, 2000년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WTO·OECD 등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간 협력사업 강화

■ 추진 과제

가. 다자간 국제기구 논의에 대응

-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전향적으로 대응

※ '99년도에는 WTO 논의가 가장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99.11월 제3차 WTO 각료 회의에 대비하여 관세 등 무역 관련 이슈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을 '99.8월까지 마련

나.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

○ 아시아 15개국 · ESCAP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협력회의(AFACT) 및 기술 전시회(EDICOM '99)를 서울에서 개최

- 기간 : '99.9.6~11일(6일간), COEX 및 교육문화회관
- 행사내용 : 아시아국가 대표간의 전자상거래 협력 모색 및 아시아 최대규모의 세미나 · 전시회

다. 한 · 미, 한 · 일 등 다른 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추진

○ 한 · 미 전자상거래 협력

- 한 · 미 전자상거래 공동성명('98.11월) 후속조치 차원에서 한미 기업협력위원회(CBC) 산하의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활용
- 제2차 CBC 회의('99년 상반기 예정)시 양국간 Action Plan 교환

○ 한 · 일 전자상거래 협력

- 「한일 EC추진 협의회」구성 및 회의 개최(1차회의 '99.4월 일본)
- 전자업종 전자상거래, 인증제도, 인터넷 티켓판매 등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 '99.1월 양국 전문가 Workshop을 통하여 협의회 구성 및

협력사업 합의

참고자료

1. 전자상거래의 파급효과

가.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과 (미국의 사례)

○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정보기술 산업이 미국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

- GDP 성장 : 3년('95~'97)간의 실질경제성장(GDP)의 1/3 이상(34.6%)을 기여
- 인플레이션 하락('97) : 3.1% → 2.0%
- 정보기술분야 기업설비투자증가 : 총 설비투자액의 3%('60년대) → 45% 이상 차지('97년)
- 고용 창출 : 7백만명 이상이 정보기술산업에 종사

○ 전자상거래 성공사례

- 온라인 전자서점 Amazon의 급성장
· 연간 매출액 : 1,600만달러('96년) → 1억4,800만달러('97년)
· '98년말 주식총가치는 101억달러로 미국 최대서점인 Barnes & Noble의 4배

- 주요기업의 인터넷 매출액 증가 추이

· Cisco사 : 1억불/년('96년) → 32억불/년('97년) → 1억불/주('98년)
· Dell컴퓨터사 : 1백만달러 미만/년('96년) → 6백만달러/일('97년)
· Auto-By-Tel사 : 18억달러/년('96년) → 5억달러/월('97년)

- 인터넷을 통한 연말선물 판매
· 미국 가정의 약 10%('97년) → 약 40%이상('98년)

※ 자료 : "The Emerging Digital Economy('98.4)", "U.S. Government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1st Annual Report('98.11)"

나.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B to B) 성장요인

○ 구매비용의 감소

- EDI를 활용할 경우 5~10%의 조달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감소폭 확대

※ GE의 사례 : 온라인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부서의 인건비 30% 절감, 원 · 부자재 비용 20% 인하(향후 3년동안 5~7억달러의 비용절감 예상)

- 재고 감소
- 재고수준의 적정 운용으로 서비스 향상 및 운영비용 감소
- ※ IBM의 사례 : '96년 부서간 전자적인 정보교환과 신속한 처리로 재고회전을 40% 증대 및 판매량 30% 증가

○ 제품생산기간(cycle time)의 단축

-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교류 확대로 생산소요시간을 단축
- ※ 미국 자동차업체의 사례 : 새로운 모델 개발에서 대량 생산까지 4~6년('80년대) → 3개월

○ 고객서비스의 향상

- 자원 및 시간의 절약으로 보다 양질의 고객서비스 가능
- ※ Cisco의 사례 : 고객서비스 생산성 200% 증가 및 1억 2,500만달러 이상이 고객서비스 비용 절감

○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의 감소

-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판매·홍보 조직의 효율화로 인한 이익 창출
- ※ Boeing의 사례 : 인터넷 주문처리를 통해 소비자 문의전화수가 하루 600건 감소하고 주문량 20% 증가

○ 새로운 판매기회 확대

-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을 극복
- ※ Dell의 사례 : Dell 고객중 80%가 Dell web site 이용전에는 Dell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었음

2.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가. 국제기구 논의 동향

■ WTO

- 제2차 WTO각료회의('98.5월)에서 「전자상거래 선언문」 채택
-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99년 말까지 유지
- 모든 무역관련 이슈(all trade related issues)를 검토하는 포괄적인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3차 각료회의에 보고

○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합의

- 일반이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산하 이사회별 작업 이슈를 확정
- 서비스교역이사회 : GATs협정과 관련하여 범위, 투명성, 개도국의 참여증진, 경쟁, 내

국민대우, 관세 등

- 상품교역이사회 : 시장접근, 표준, 통관절차, 원산지 등
- 지적재산권이사회 : TRIPs협정과 관련하여 저작권·상표권 보호, 신기술과 기술에의 접근 등
- 무역개발위원회 :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개도국의 참여 증진, 인프라 접근과 기술이전 등
- ※ 당초에는 정부조달위원회 및 정부조달 투명성작업반의 작업프로그램도 논의되었으나 삭제함

○ 향후 동향

- '99.3월말 이전에 중간 점검회의를 갖고 산하 이사회는 작업결과를 '99.7월말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
- '99.11월 제3차 각료회의에서 전반적인 검토

■ OECD

- 전자상거래 장애 제거를 위한 회의('97.11월 핀란드 트루크), 전자상거래 각료회의('98.10월, 캐나다 오타와) 등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

○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의 결과

- 전자상거래 조세에 대한 보고서, 3개의 각료선언 및 Action

전자상거래

Plan 등을 채택하여 향후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전자상거래 조세 보고서 : 전자상거래 조세원칙(중립성, 효율성, 명확성 등)을 제시하고 소비자국 과세원칙을 명시
- 소비자 보호 각료선언 : 전통적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보호 지침을 '99년말까지 제정
- 사생활 보호 각료선언 : 사생활보호 지침('80)상의 원칙을 전자상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인증에 대한 각료선언 : 국제적으로 조화된 적절한 인증제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UNCITRAL 모델법에 기초한 제도 정비

○ 재정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별로 각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논의 예정

■ APEC

- '98.11월 정상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청사진(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 채택
- '97년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전자상거래 Task Force를 구성('98.2월)하여 4차례의 회의 개최

○ APEC 전자상거래 청사진

- APEC 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를 정리하고 활동비전을 제시
- 민간·정부의 역할 : 민간은 기술, 서비스 개발 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법제도적 환경 마련, 신뢰증진, 국제 협력, 선도적 역할 등을 담당
- 시범적인 작업 프로그램 추진 : 사례연구 확대, 전자상거래 측정지표 개발, 금융적 측면의 작업, 경제기술협력 강화, 전자인증 실현 등
- 가상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지원 체제 개발 :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개발 전략, 인력자원 개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련 정보 교환
- 종이없는(paperless) 무역실현 :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도국은 2010년까지
- Y2K에 대응 : '99년 상반기중 "지역 긴급계획 전문가회의" 개최

○ 향후 동향

- 전자상거래 청사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가상 운영 그룹(virtual steering group) 구성
- 논의 진전사항을 연 1회 고위간부회의(SOM)에 보고

■ UNCITRAL

○ 전자상거래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측면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서 관련 입법시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 전자상거래 모델법('96년) 제정
※ 동 모델법은 우리나라(전자상거래기본법)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용

- 현재는 전자서명, 인증기관, 인증서 등에 대한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 중

※ '98.6월 제33차 UNCITRAL 전자상거래 작업반회의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모델법에 기초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을 제안한 바 있음

나. 양자 논의 동향

○ 양자간의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또는 보고서 채택

- 미·네덜란드('97.10월), 미·EU('97.12월), 미·일('98.5월), 미·프랑스('98.6월), 미·아일랜드('98.9월), 한국·미('98.11월)

○ 미국-EU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논쟁

- 미국은 민간 자율규제, EU는 법적 보호장치를 선호
 - 현재까지 정보당사자의 열람 요구권, 피해보상 처리방식 등에 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99.6월 개최될 미·EU 정상회의 전까지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키로 함
 - EU는 구속력이 있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95.10월) 하여 '98.10.25일부터 시행
 - EU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미국이 대표적으로 해당됨)에 대해서는 EU로부터 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
 - ※ 아직까지 EU회원국 중에서 미국으로의 정보교류중단을 밝힌 국가는 없음
 - ※ 15개 회원국은 동 지침을 국내 입법화한 국가는 벨기에, 그리스, 이태리,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등 6개국에 불과
 - 미국은 EU의 지침 시행이 전자상거래 촉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EU측과 협상을 진행
- ※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입법**
- 인터넷과 세자유법(Internet Tax Freedom Act) : 3년동안 한 시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과세를 유예
 - 디지털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 WIPO 조약의 이행과 온라인상에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
 - 어린이사생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13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정부문서감축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 정부내의 전자문서 사용, 보관 및 전자서명 인정
 - 차세대인터넷연구법(Next Generation Internet Research Act) : 대학과 협력하여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인터넷 개발